| 의안번호 | 제44호 |
|---|---|

#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제 출 자 | 논산시장 |
|---|---|
| 제출연월일 | 2018. 7. 12. |

#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제44호 |
|---|---|

제출연월일 : 2018. 7. 12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항목을 폐지하여 시설물관리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기존 체육시설(족구장,테니스장,농구장,체력단련장,탁구장) 중 탁구장 시설만 유료화 되어 탁구장 이용객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 민원과 탁구장 운영에 따른 비용(기간제근로자 인건비)이 손익계산상 많은 적자가 대두되어 탁구장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탁구장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. 예고기간 : 2018. 3. 15. ~ 4. 05.

나. 예고결과 : 논산시탁구협회 의견 제출(붙임 참고)

다. 검토의견 : ①탁구장 수익성 대비 운영에 따른 비용(기간제근로자 인건비)이 손익계산상 많은 적자가 대두됨.

②일 이용인원 대비 탁구대의 수량 확보로 대기시간이 많지 않음.

③타 종목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 대두.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체육진흥과(041-635-2433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**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**

제8조제1항 중 “같으며 탁구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”를 “같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성 명 |
|---|---|---|
| 입안자 | 공공시설사업소장 | 윤 병 열 |
| | 공설운동장팀장 | 홍 문 표 |
| | 담 당 자 | 박 창 열 (041-746-8413) |

## □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8조(사용료)**①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2와 같으며, 탁구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| **제8조(사용료)**①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2와 같다.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
| **제10조(사용료 면제 등)** | **제10조(사용료 면제 등)** |
| ① 생략 | ①(현행과 같음) |
|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탁구장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.<br>1. 만 6세~만 12까지의 어린이(이하 초등학생)<br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br>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3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자 및 동반가족 및 활동보조인 1인<br>4.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<br>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<br>6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 | ② ~ ③ (삭 제) |

| | |
|---|---|
|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<br>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,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,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유공자증 및 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<br>8.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 공로자증, 특수임무 공로자 유족증, 특수임무 부상자증, 특수임무 부상자 유족증, 특수임무 유공자증,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<br>③ 제2항 각 호의 할인 규정에 적용되는 자에게는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| |
| **제17조(시설의 개방)**<br>①~⑤ 생략<br>⑥ 탁구장의 개방시간은 09:00~22:00로 한다. 다만,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| **제17조(시설의 개방)**<br>①~⑤ (현행과 같음)<br>⑥ (삭 제) |
| [별표 3] 탁구장사용료 (별지작성) | [별표 3] (삭 제) |

〔별표 3〕

## 탁구장 사용료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시설명 | 기준 | 기본료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탁구장 | 1명 1시간 | 1,000 | -초과 30분당 500원 가산<br>-선착순 배정<br>-입장(사용) 제한<br>▶보호자 동행 없는 10세 미만자<br>▶운동시설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자<br>-개관 :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09:00 ~ 22:00<br>-휴관 : - 매년1월1일.<br>- 매주월요일.<br>- 설,추석,연휴기간. |

## 붙임1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없음

### 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### 3. 작성자

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열

**붙임2** **입법예고 의견제출**

#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

| 구분 | 찬성 | 반대 | 제출자 |
|---|---|---|---|
| 개정조례안 | 0 | 162명 | 논산시탁구협회장 외 161명 |

○ 기타제출의견

1. 시민탁구장 관리 근무자 상주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를 하여 탁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종전 근무인원 배치 및 인건비 계상

2. 탁구장 개방시간 동/하절기 구분없이 22:00시 폐장조치
※현 동절기 21:30 폐장, 하절기 22:00시 폐장

3. 현행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, 명절 연휴기간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조정하여 휴관일 축소 운영하여 이용객 이용시간 확대운영

**참고**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## □「지방자치법」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「국민체육진흥법」

**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12.20.〉

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어야 한다. 〈개정 2012.2.17.〉

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